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대법원에서 변론을 진행한 후 판결 선고 이전에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대법원은 법률심이자 사후심이고, 상고심의 변론절차는 보충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하급심과 같은 변론갱신은 불필요하고,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대법관도 합의에 관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 그러나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절차적 논란이 있어 왔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을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에 신설하기로 함

3. 주요내용

- 대법원에서 변론을 연 이후 재판부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변론을 열지 않고 새로운 대법관도 합의와 판결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안 제8조의2 신설)

4.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변론 후 재판부 구성의 변경) 변론을 연 후 재판장 또는 관여 대법관이 바뀐 경우에도 다시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장 또는 대법관도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 중 “제7조의2 및 제8조”를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8조의2(변론 후 재판부 구성의 변경) 변론을 연 후 재판장 또는 관여 대법관이 바뀐 경우에도 다시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고, 이 경우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재판장 또는 대법관도 합의에 참여할 수 있다.</u></p>
<p>제9조(형사소송절차에의 준용)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7조까지, <u>제7조의2 및 제8조</u>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절차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여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9조(형사소송절차에의 준용) - ----- ----- <u>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u>는 ----- ----- ----- -----.</p>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254